

# 패러다이스 관개지역구

## 수도서비스 중단 방침

이 방침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관한 지역구의 방침을 성립한다. 방침의 이러한 조항과 정식 단수통지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그리고 지역구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십퍼센트(10%)가 사용하는 언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방침은 지역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지역구는 지난해 납부 불능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한 횟수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매년 보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주정부 수도자원통제국에 이 정보를 보고한다.

### 납부일과 벌금

고지서는 고지서에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해야 한다. 청구서가 발급된 날짜로부터(“청구일”) 이십오일(25)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요금 전액이 체납된다. 다음 청구일까지 청구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되고 그러한 요금의 일부가 되고, 체납잔액에 월 이 퍼센트(2%)의 벌금을 지역구가 수금하게 된다. 계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벌금의 적용을 계속하거나, 혹은 수도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체납된 미납 요금이 지역구의 연간 과세액에 가산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수도 중단 통지서

청구서를 발송한 후 계정이 칠십(70)일 동안 체납인 경우 수도서비스가 중단된다. 처음 청구일로부터 오십(50)일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십오일(15) 통지서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십오일 통지서 수수료를 계정에 적용한다. 십오일 통지서 수수료는 이사회가 승인한 수수료 및 요금에 따라 정한다.

정식 단수통지서는 정해진 체납단수일로부터 칠(7)영업일 전에 발송한다. 정식 단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배달불능으로 돌아오는 경우, 지역구 직원은 주거지를 찾아가서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단수 통지서를 두고 오는 성실한 노력을 한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정식 단수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1) 고객의 이름과 주소, 2) 체납금액, 3)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납부금이나 납부약정일, 4) 체납요금을 납부할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5) 청구서 재고와 항소에 관한 청원절차의 설명, 6) 체납서비스요금의 할부상환 등으로 납부연기, 인하, 별도납부약정을 고객이 요청할 절차의 설명

체납요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거나 처음 청구일로부터 칠십일(70) 내에 납부약정을 하지 않으면, 체납되고 칠십일일부터 서비스는 종료되고 계량기가 물리적으로 단수된 여부와 상관없이 계량기 봉인 수수료를 적용된다. 이사회가 승인한 수수료 및 요금에 따라 계량기봉인 수수료를 정한다.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기 전에 체납요금과 이전 청구요금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

### 납부연기 혹은 별도납부일정 요청

지역구 고객센터 직원에게 전달한 증거서류가 담긴 요청문서는 주거용 고객이 서비스요금의 할부상환 등의 납부연기 혹은 별도납부일정을 요청하는 유일한 절차이다.

유자격 고객이란 문서 요청을 하고 (1) 수도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의 서비스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는 주치의사의 인증서를 제출한다. (2) 고객은 수도서비스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증명한다. 고객의 가족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의 정부보조 현재 수혜자이거나,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 정상 청구주기에 서비스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간주될 것이다.

전술한 기준요건에 전부 부합한 고객은, 매월 서비스로 누적되는 현재 요금에 추가적으로, 삼(3)개월 기간동안 체납요금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할부상환약정을 맺고 체납요금납부를 연기할 권리가 있게 된다. 지역구 직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약정의 할부상환기간은 삼(3)개월보다 더 길어지지만, 십이개월(12)을 초과하면 안된다. 약정에 따라 고객이 적어도 육십(60)일 동안 납부하지 못하면, 건물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최소한 오(5)영업일 통지서를 게시하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청구서의 연기와 할부상환 요청은 주거용 고객만 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패러다이스 관개지역구에 6332 Clark Road, Paradise, California, 전화번호 530-877-4791 으로 연락하여 요청해야 한다.

### 청구서 항소

만일 고객이 청구서와 요금, 혹은 체납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고객은 지역구 직원에게 즉시 전화번호 530-877-4971 으로 연락하거나 6332 Clark Road, Paradise 에 위치한 지역구의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지역구 직원에게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연락한 후 청구서가 잘못되었다고 여전히 생각하면, 분쟁통지서나 최종 체납통지서를 받고 오(5)영업일보다 더 늦지 않게 지역구관리인에게 청구서를 즉시 서면 항소할 수 있다. 분쟁통지서나 최종 체납통지서를 받고 오(5)영업일 내에 지역구에 전달되지 않고 받지 않는 경우 고객 항소권은 시효가 소멸되고 즉시 거부된다. 적시항소문에서 고객이 청구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와야 하고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해야 한다. 지역구 관리인은 시기 적절하게 항소 판결을 내려야 하고, 분쟁된 청구서에 당시 나왔던 전체 요금에 대해 지역구 관리인의 판결은 최종적이라고 여겨지게 된다. 지역구 관리인은 항소한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혹은 지역구 관리인이 고객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심리절차가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심리를 하게 된다. 지역구 관리인의 판결을 포함한 지역구 관리인의 판결은 고객에게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구 관리자 앞에서 항소가 대기 중이면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지역구 관리인에게 보낸 항소문서는 고객이 인화된 수수료를 요청할 유일한 절차이다. 고객의 수수료 산정에 착오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만 지역구 관리인은 지역구 관리인의 재량으로 요청을 승인할 수도 있다. 잠정적인 수수료 인하는 주거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공익기업법 16481.1 B 항과 보건안전법 § 116916 (b)을 이행하기 위한 매스터 계량기나 혹은 다세대 주거용 건물에서 개별적 계량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 주거용 입주자에 대한 수도서비스의 종료

패러다이스 관개지역구는 건물주, 관리인, 운영인이 기록상 고객으로 나온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에서 매스터 계량기와 개별적 계량기로 주거용 입주자에게 수도를 공급한다.

매스터 계량기 계정이거나 개별 계량기 계정이 채납되고, 매스터 계량기나 개별적 계량기를 종료하겠다는 위협을 받을 때 이러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지역구는 주거용 입주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정한다.

### 1. 주거용 입주자 통지서

다세대 주택 혹은 모빌홈 파크 혹은 비슷한 시설의 건물주, 관리인, 운영인이 지역구에 기록상 고객으로 나와있고 계정이 채납이면, 통지서에 나온 날짜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실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십오일(15) 전에 통지서로 주거 유닛의 문마다 게시하여 주거용 입주자에게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거 유닛의 문에 통지서를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실행이 불가능하면, 공동구역과 건물이나 모빌홈파크나 비슷한 구역의 출입구마다 통지서 사본 두 개를 게시하게 된다. 통지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그리고 지역구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최소한 십퍼센트(10%)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오게 된다.

통지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거용 고객에게 알려주게 된다.

- 서비스를 청구하게 되는 지역구의 유틸리티 고객이 될 권리
- 채납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유틸리티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
- 서비스의 종료를 예방하거나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주민들은 아래 규정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지역구에 연락해야 한다.

### 2. 패러다이스 관개지역구의 유틸리티 고객이 되는 주거용 세입자를 위한 지침서

다세대 주택 혹은 모빌홈 파크 혹은 비슷한 시설의 주거용 입주자는 지역구의 유틸리티 고객이 될 수 있으며 유틸리티 고객이 됨으로 서비스 종료를 피하거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주거용 입주자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패러다이스 관개지역구 사무실에 6332 Clark Road, Paradise, 전화번호 530-877-4971 으로 연락해야 한다.

지역구는 신용을 쌓는 조건으로 입주자가 신용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기 이전 6 개월 동안 누적된 월세 적시 납부 증명서나 비슷한 신용채무 증명서를 제공하여 신용도를 쌓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벅 카운티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커뮤니티 법률정보센터에 25 Main Street, Suite 102, Chico, 전화번호 530-898-4354 로 주거용 입주자가 연락할 수도 있다.

주거용 입주자나 주거용 입주자의 대리인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이러한 규칙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역구는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의무가 없다. 주거용 입주자 한 명 이상이나 주거용 입주자의 대리인이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매스터 계량기 계정의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용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입주자나 이런 요건을 충족한 대리인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주거용 입주자의 대리인에 세입자 협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 **편견 없는 해석**

매스터 계량기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세대 주택 혹은 모빌홈 파크 혹은 비슷한 시설의 주거용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는 미납으로 종료하지 않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구는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편견 없이 해석하게 되고, 지역구가 주거용 입주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하는 적절한 노력을 했었던 경우는 예외이다.